이해상충관리지침

주식회사 나모펀딩

이해상충관리지침

제정 2021. 06. 01.
개정 2021. 10. 01.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조제1항제6호, 제14조제3항제4호, 제17조제1항제8호, 제1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 제9조제3호에 따라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 주식회사 나모펀딩(이하 “회사”)과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 절차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기본원칙

제2조(고객이익 우선의 원칙)
① 고객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
② 회사의 임직원은 고객의 이익에 반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의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이해상충문제의 숙지 및 차단)
① 임직원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회사나 고객을 상대로 자신의 이익 또는 보상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회사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업무 이외의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 또는 고객의 자산, 인력 및 업무상 지득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절 이해상충의 관리 절차

제4조(이해상충의 관리 등)
① 회사는 회사와 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과 고객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고객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회사 및 임직원은 제1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해당 이용자들의 연계투자를 받거나 연계대

출을 실행하여야 한다.
③ 회사 및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들의 연계투자를 받거나 연계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회사 및 모든 임직원은 회사 내부통제기준 제5조(업무분장 및 조직구조), 제30조 (이해상충방지체계) 및 제49조(겸영·부수업무의 영위) 등을 참고하여 고객과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이해상충방지체계) ① 회사는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 간에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인식·평가하고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등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준 및 관리체계(이하 '이해상충방지체계'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이해상충방지체계를 수립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이해상충의 파악·평가·관리 체계가 합리적이고 검증 가능할 것
2.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이 적정할 것
3. 이해상충 관리 체계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 질 것
4. 그 밖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③ 회사가 이해상충방지체계를 수립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차입자에 대한 정보 확인, 업무의 공정한 영위 및 이해상충방지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업무 담당직원의 적격기준, 일반적인 조사·검증에 관한 내용
2. 겸영·부수업무의 영위와 관련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
④ 회사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평가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해상충방지체계에 따라 그 사실을 미리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에 해당 이용자들의 연계투자를 받거나 연계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이용자들의 연계투자를 받거나 연계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회사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 업무위탁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겸영·부수업무의 영위) ① 회사가 법 제13조제7호 및 제8호의 겸영·부수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의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회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거나 이용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겸영·부수업무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겸영·부수업무의 영위와 관련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의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방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이해상충의 유형 등)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한 이해상충의 유형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
2. 회사와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
3. 회사의 임직원(임직원의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과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상충
   가. 다른 업무의 겸영으로 인한 이해상충
   나. 재산상 이익 또는 향응의 제공이나 수령으로 인한 이해상충
4. 동일한 투자대상에 투자하는 고객 사이의 이해상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상충
   가.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의 관여 또는 특정 조건의 투자로 인한 이해상충
   나. 다른 고객과의 다른 계약 또는 상환 처리로 인한 이해상충
   다. 그 밖에 고객간의 형평성을 해할 수 있는 요청·행위으로 인한 이해상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회사가 달리 정한 이해상충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사 및 임직원은 관련 법규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객과 이면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이해상충관리위원회)

① 회사는 이해상충의 발생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처리방안의 결정을 위하여 이해상충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해상충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준법감시인 또는 상근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1인 이상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이해상충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준법감시인은 부의된 안건에 관하여 이해상충우려가 크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에게 질의하는 등 적절한 이해상충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이해상충관리위원회는 1년에 1회 이상 회사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점검하여야 한다.

⑤ 이해상충관리위원회의 조사와 결정은 5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이해상충관리위원회의 운영) 이해상충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제2항에 의한 이해상충관리위원회 위원은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경영지원부서장 및 대표이사가 지정한 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맡는다.
2. 이해상충관리위원회의 위원중 대표이사가 지명한 자나 또는 준법감시인은 이해상충관리위원회의 간사로서 이해상충관리위원회의 개최와 회의록 작성을 주관한다.
3. 이해상충관리위원회의 개최는 각 업무담당자나 책임자로부터 준법감시인에게 보고된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업무에 대하여 또는 준법감시인의 직권에 의하거나 기타 위원 등의 안건 인식 및 회의 개최 요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다.

4. 준법감시인은 해당 안건 사항에 대하여 회의 개최 전 안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각 부서의 업무담당자 또는 부서장은 안건 조사를 위한 준법감시인의 자료제출 요청 또는 업무실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준법감시인은 제4호에 의한 조사결과를 이해상충관리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이해상충관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 추진 중단을 결정하거나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감사담당부서장 또는 준법감시인은 제5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전사적인 이해상충방지체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이를 이해상충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임직원의 타 회사 겸직관련) ① 회사는 임직원의 타 회사 겸직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겸직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2. 이용자의 이해상충을 초래하는지 여부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지 여부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검토·관리 결과 및 겸직 수행과정에서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정보교류 차단) 회사는 부서간 또는 계열회사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무공간분리 : 회사가 자기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를 담당하는 부서와 고객(이용자)의 연계투자를 담당하는 부서의 사무공간은 공간적으로 분리시킬 것
2. 임원 : 회사의 상근 임원이 계열사의 상근 또는 비상근 임원을 겸직하지 않도록 할 것.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